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0220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0220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53586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담당변호사 김미강

피고, 피항소인1. C

2. D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0. 3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535865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9. 8. 20. 체결된 각 채권양도 계약을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 A(이하 'A'라 한다)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24. 4. 29. 원고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4. 7. 19.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 및 증거들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나머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을 "원고 및 A"로, "원고 B"를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제10쪽 제5행의 각 "피보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사해행위에"를 "위한 사해행위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기각하였고 대법원 2022다252660호 상고하였으나,"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22다252660호로 상고하였으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사행행위취소"를 "사해행위취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의 "한편,"부터 제9쪽 제7행의 "타당한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및 A는 망 I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포괄승계받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채권자인 망 I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5. 7. 14.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388,950분의 350,9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000. 1. 29.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M에 대하여 위 양도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중에, 2019. 8. 20.

피고들에게 N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한 점, ② 망 I와 원고는

2020년경(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0형제81584호, 형제번호 참조)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④ 망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 28.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합30061호로 M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N가 E과 사이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I 및 K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거나 N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 I는 2020. 1.경에 당시 이미 E이 M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들이 위와 같이 E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3160호)에서 원고는 2020. 6. 12. 위 소송의 소장 부분, 채권양도 증서 등을 송달받았는데, 당시 망 I는 E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817, 2020가합546083호(병합)] 및 M을 상대로 채권양도의사표시 진술 등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합30061호)을 제기하여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망 I에게도 위 각 소송의 집행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던 점, ④ 망 I는 2020. 1. 28. M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도의사표시 진술 등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합30061호)의 소장에서 '아들인 원고를 통하여 E이 N에게 이 사건 부동산 2,388,950분의 350,951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망 I는 원고를 통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점(제1심판결의 [별지] 청구원인 주요 내용 참조), ⑤ 실제로 원고는 2019. 8. 28. 직접 N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N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예약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3160호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망 I와 함께 2020년경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형사고소한 점[당시 망 I(J생)는 이미 90세였다], ⑥ 원고는 망 I의 사망일(2022. 5. 1.) 이후인 2022. 10. 13. 망 I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0316호)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I는 원고와 함께 E을 형사 고소한 2020년경부터 원고를 통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망 I는 2020. 6. 12.경 자신의 법률사무를 대행하던 원고를 통하여 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 "E에"를 "E이"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2024. 10. 30.자 참고자료제출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김옥곤

판사이동현

별지